

※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원칙 (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제5판, 2021.12.14. 이후)

□ 재택치료 약국 원외처방 조제 및 청구 관련 유형 (‘22.2.16 변경사항 반영)

유형		투약안전관리료 산정가능 여부* (전액보험자부담)	본인부담금 면제 (내국인 가입자 기준)	조제시 참고사항 기재내역	MX999(기타내역) 기재사항
전체 약국	코로나19 관련 치료 약제 처방	○	○	H/재택치료	재택치료 +코로나19확진
	타질환 약제 단독 처방	○	×	×	코로나19확진
	코로나19관련 치료 약제와 타질환 관련 약제가 각각 분리된 처방 (처방전 2매 발행)	○ (다만, 투약·안전관리료는 1회만 산정)	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 : ○ 타질환 약제 처방 : ×	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 : H/재택치료 타질환 약제 처방 : ×	재택치료 +코로나19확진
(팍스로비드 공급 약국만 해당)	팍스로비드 단독 처방	○	○	× (처방약을 보고 확인)	경구치료제 +코로나19확진
	팍스로비드 + 코로나19관련 치료약제 처방	○	○	○ (H/재택치료)	경구치료제 +코로나19확진

*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 : 3,010원 (31.95점×94.2원('22)), 야간·공휴등 별도가산 적용 ×, 차등수가 적용 제외(2.25 조제분부터~), 청구(2.25~)

※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청구방법

구분		청구방법
내국인	건강보험가입자(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)의 급여	심평원 청구 → 공단 일괄 지급(공단부담금+환자본인부담금)
	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	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
외국인	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 공단부담금	심평원 청구 → 공단 지급(공단부담금)
	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 환자본인부담금	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
	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	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